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2659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9. 3.
제출자 : 정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30조”를 “제30조”로 한다.

제5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미디어콘텐츠창작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재화의 수출)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<u>30조</u> 에도 불구하고 영(零) 퍼센트의 세율(이하 “영세율”이라 한다)을 적용한다. ② (생 략) 제55조(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)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(稅源管理)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	제21조(재화의 수출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30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55조(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미디어콘텐츠창작업</u> 4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지출: 0원, 수입: 114억원, 총비용: △114억원

구 분		연 도						(단위: 억원)	
	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지출				해	당	없	음		
	소 계(A)	-	-	-	-	-	-	-	-
수입	○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(§ 55)	24	32	32	32	32	152	30.4	
	소 계(B)	24	32	32	32	32	152	30.4	
총 비용(A-B)		△24	△32	△32	△32	△32	△152	△30.4	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제55조 (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)	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하여 세수 증가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55조 (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, 개정 법률안이 '25.12월 중에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(§ 55)
- 세수증: 152억원(지방소비세 포함)
 - 국세청 추징내역 등을 바탕으로 연간 세액을 계산하여 세수증 추계

IV. 부대 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주무관	사무관	과장	국장
민다연	김만기	최지훈	김병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민다연	044-215-4326	gfdxm140@korea.kr

*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

I. 항목별 재원조달방안

- 해당없음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〈항목별 재원조달방안〉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 \ 연 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○ 조세수입·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·차입						
○ 회계·기금 간 전입						
○ 기존 예산·기금의 항목 간 조정						
○ 기타						
〈합 계〉						

II. 부문별 재원조달방안

- 해당없음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〈부문별 재원조달방안〉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 \ 연 도	20XX	20XX	20XX	20XX	20XX	합 계
□ 중앙정부						
○ 일반회계						
○ ○○특별회계						
○ ○○기금						
□ 지방자치단체						
○ 일반회계						
○ ○○특별회계						
○ ○○기금						
□ 기타						
○						
〈 합 계 〉						

III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1.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- 해당없음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2.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“ 해당없음 ”

3. 기타 재원조달 방안

“ 해당없음 ”

IV. 부대의견

- 해당없음

V. 협의사항

협의시점	협의기관	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
		해당사항 없음 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VI. 작성자

- 성명

주무관	사무관	과장	국장
민다연	김만기	최지훈	김병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민다연	044-215-4326	gxm140@korea.kr

*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